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9.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1. 9. 26

다. 상 정 일 자 : 2001. 9. 26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김 종 철

나. 개정사유

- 문화재 보호법 제42조 ①항이 2001.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정 문화재 뿐만아니라 등록문화재도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됨.

- 따라서, 상기내용을 화순군세감면조례에 반영키 위함.

다. 주요내용

- 문화재 보호법 제42조 제①항의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8조 ②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재 보호법 개정내용이 2001. 7. 1부터 시행 됨에 따라 동법 제42조 제①항에 의거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임.
- 문화재 보호법(제42조 ①항)에 의하면 지정 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에 의하면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임.
-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위안가결”

첨 부 :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안건

1. 심의주문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첨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2001. 7. 1부터 시행하는 등록문화재에대한 지방세(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전남도로부터 통보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하고 화순군세감면조례중 문화재에대한 감면조례를 개정하기위함.

3. 주요골자

문화재 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조항을 신설함.

4. 개정조례안 : 별첨

5. 관련 법령 및 근거 : 도 준칙안 및 문화재 보호법

6. 주무과 의견

심의 주문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되,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p>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p> <p>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시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p> <p>3. 문화재보호법 및 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p> <p>< 신설 ></p>	<p>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 -----</p> <p>1.----- ----- -----</p> <p>2.----- ----- ----- -----</p> <p>3.----- ----- -----</p> <p>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p>